

시군통합관련의회의견청취

□ 청취이유

- '94. 3. 16 여야합의로 지방자치법이 개정(법률 4741호)되면서 도농통합형의 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
- 생활권, 문화권, 역사성이 동일한 관내 6개 시군을 통합권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통합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
-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시군통합여부 및 통합시의 명칭에 관한 도의회의 의견을 얻어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임

※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제4조 및 제7조, 같은법 시행령 제2조

□ 구하고자 하는 의회의견

- 4개대상 시군(충주시+충원군, 제천시+제천군)의 통합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
 - ※ 충주시, 충원군의 통합은 충원군 주민, 의회 모두 반대로 불통합 확정되어 통합 추진 제외
- 통합시의 명칭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
 - ※ 별첨 의견회시 서식 참조

□ 추진상황 개요

○ 추진배경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낭비 요소를 줄이고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,
- 인위적으로 분리된 동일생활권을 통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

○ 통합 필요성

- 충주시·충원군 : 1956년 시와 군으로 분리된 한고장으로 통합시 상호보완적 역할로 균형발전 기대
- 제천시·제천군 : 1980년 시승격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으로 사실상의 원상회복이며 침체되고 있는 제천군 지역의 발전 가속화 기대

○ 주민의견조사

· 일 시 : '94. 4. 25

· 조사결과

시 군 별	찬 성	반 대	회수율
〔 청주시	76.5%	23.5%	(83.6%)
〔 충원군	34.3%	65.7%	(89.3%)
〔 충주시	90.2%	9.8%	(96.2%)
〔 충원군	61.8%	38.2%	(92.9%)
〔 제천시	84.6%	15.4%	(94.7%)
〔 제천군	70.7%	29.3%	(94.7%)

○ 시군의회의 의견

- 청주시 : 찬성
- 청원군 : 반대 (3:11)
- 충주시 : 찬성
- 충원군 : 반대 (5:7)
- 제천시 : 찬성
- 제천군 : 반대 (4:4)

□ 도의 의견

○ 충주시·증원군 통합의 경우

- 증원군 출신들도 외지에 가면 “충주에서 왔다” 라고 할 정도로 양지역이 역사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,
- 통합시 상호보완적 기능으로 동일권역 전체의 균형있는 개발과 발전이 기대되며,

* 지역개발주요지표 및 인구증감추이 분석

<지역개발 주요지표>

구분	도로포장율	상수도보급율	하수도보급율	의료기관수
충주시	92.9%	85.7%	54.1%	74개소
증원군	78.3%	7.5%	-	7개소

<인구증감 추이>

구 분	'60년	'70년	'80년	'90년	'94현재
충주시	67,332	87,727	113,138	129,994	141,009
증원군	123,202	133,754	104,056	65,153	67,125

—— 통합시 예산절감 기대 효과 : 약 113억원 정도 ——

- 중복기관 시설의 연간 운영비 절감 : 9억원
- 기본적 경상비 예산 절감 : 년 95억원
- 향후 5년간 인건비 절감 : 9억원

—— 절감예산 지역개발비 투자 활용 기대 ——

- 비록 증원군의회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주민의 찬성(61.8%)과 충주시의 압도적 찬성을 감안할 때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- 통합시의 명칭은 고려초기 이래 “충주”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고, 시와 군 모두 “충주” 지명을 채택하고 있어 “충주시”로 함이 타당함.

○ 제천시, 제천군의 경우

- 1980.4.1 제천시의 승격과 함께 분리된 곳으로 오랜 옛날부터 제천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에 변화가 없고
- 제천시 승격이후 상대적으로 제천군의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인구감소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,

* 지역개발주요지표 및 인구증감추이 분석

<지역개발 주요지표>

구분	도로포장율	상수도보급율	하수도보급율	의료기관수
제천시	85.6%	74.9%	42.4%	59개소
제천군	59.1%	15.1%	-	3개소

<인구증감 추이>

구 분	'80분리시	'85	'90	'94현재
제 천 시	85,557	102,304	102,037	109,915
제 천 군	76,819	49,452	37,887	36,083

—— 통합시 예산절감 기대 효과 : 약 60억원 정도 ——

- 중복기관 시설의 연간 운영비 절감 : 8억원
- 기본적 경상비 예산 절감 : 년 45억원
- 향후 5년간 인건비 절감 : 7억원

—— 절감예산 지역개발비 투자 활용 기대 ——

- 제천군 주민들의 강한 통합의지(70.7%찬성)등을 감안할 때 통합 운영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
- 통합시의 명칭은 현재 양 시군이 “제천”이라는 동일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이견의 여지가 없고, 전래되고 있는 상징성으로 보아 “제천시”로 함이 타당함.

시군통합관련 자치법령 관계규정

- 법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의 구역)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.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.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법제7조(시.읍의 설치기준 등)
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시행령
제2조(관계지방의회)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서 “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”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.

충청북도의회 의견서

[illegible]

※ 작성요령 [통합여부란에는 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를 기재
명칭란에는 찬성또는 반대와 그 이유를 기재